

◇ 会務報告 ◇

第7次 常任理事会

• 일 시 : 1984. 11월 26일(월) 12:00
• 장 소 : 외 교 구 락 부

제 6차 상임이사회 협의사항

<협의내용>

1. 의료보험 진료비 법정기간내 지급 촉구

의료보험 진료비의 법정기간내 지급율은 평균 27.1%에 불과하여 병원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법정기간내 지급을 촉구하고 장차 법정기간 초과시는 일반 은행대출금리 가산 요구도 불사키로 협의하다.

2. 의료보험 약가 유통 거래폭 시정

병원의 의료보험 약가 유통 거래폭을 평균 4.3%로 제한한것은 장기간의 자본사장과 관리과정상 손폐율등으로 인해 병원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으로 일본의 의료보험 약가 유통 거래폭 및 운 영실태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정정 토의후 대책을 강구키로 하다.

<회무보고>

1. 특정 약·재 협약가 시행을 위한 실무 간담회

- 일시 : '84. 11. 12(월)
- 장소 : 연합회 심사부장실
- 참석 : 병협 기획실장, 의협 보험국장,공단 심사부장, 연합회 심사부장
- 내용 : 1) 홍보 및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적용 시행일을 12. 1일로 결정
- 2) 년 1회 이상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조정하고 등락폭이 심한 품목은 적기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세부운 영지침 작성 및 실무반 구성등은 '85년초에 제정키로 협의

2. 특정 약·재 협약가 전국병원에 통보

- 일시 : '84. 11. 13(화)
- 적용시기 : '84. 12. 1 진료분부터
- 대상품목 : 신규-방사선필름등 64개 품목

재설정-동위원소 및 마취재료 98개 품목

○적용요령 : 구입가의 소명자료 첨부가 불필요하며 협약가를 적용청구

3. 의료보험진료비 법정기일내 지급촉구('84. 10. 29)

○제 출 처 : 보사부, 의보관리공단, 의보조합연합회

○촉구내용 :

가.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의 법정기일내 지급이 평균 27.0%에 불과하며 미수금의 적체로 병원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기 지급요망.

나. 지급통보서와 통장입금 일자의 기간이(7-10일)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급통보서 조속송부다. 지급통보서에 입금 지시일자표시

다. 전월 심사자료 보완 요청관계로 지급보류되었던 분과, 차기월 청구분 진료비를 함께 통보하여 병원에서 구분이 어려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통보서 송부

마. '84. 6월초부터 연합회는 진료과별로 청구함에 따라 1회 청구월분의 진료비가 수차에 분할 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월별로 지급

○보사부조치 :

10월 하순부터 심사요원을 증원하여 지급기간을 단축하고 법정기일내 지급토록 보험자 단체에 지시('84. 11. 15)

4. 의료보험 약가 전면 개정

- 시행일자 : '85. 1. 1 진료분부터 적용
- 내 용 : 보사부는 의료보험 약품 3,445개 품목에 대한 유통 거래폭을 조정 '85. 1. 1부터 시행키로 결정 단 마약 15개

품목은 마약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전의 유통 거래폭 27.6%를 적용.

○조정후 가격등락율

구 분	품 목 수	조 정 내 용	현고시가 대비인하율
고 가 품:			
500원이상 정제	96개품목	12.3%→3.43%	7.9%
5,000원이상주사제	16개품목	8%→3.43%	4.23%
저 가 품:	3,030개품목	12.3%→5.15%	6.37%
500원미만정제	292개품목	신고가인상신고품목	4.26%
5,000원미만주사제	11개품목	신고가인하신고품목	14.35%
평 균 인 하 율	3,445개품목	*기조정353개품목 및 조제품목은제외	6.25%

5. 제4차전국시범병원 정화추진 담당자회의

- 일시: 1984. 10. 31(수) 12:00~18:00
- 장소: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클럽
- 참석: 16명 (시범병원: 14명, 본회: 사무총장의 2명)
- 내용:

- 가. '84년도 병원계 자율정화운동 전개지침에 따른 기간중 주요 추진실적보고
- 나. 각 시범병원별 외래환자 대기시간 단축사례발표 및 보완책 협의
- 다. '85년도 병원계 자율정화 추진방향
 -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병원의 신뢰회복

6. 신규 및 미가입병원 입회 안내서 제작 배포

- 대상: 한미병원의 125개 병원
- 조치: 가입안내공문발송 (84. 11. 5)

7. 보사부 비영리법인 감사실시

- 근거: 보사부 의제 1421-15057('84. 11. 14)
- 대상: 보사부 산하 10개 단체
- 기간:
 - 전체: '84. 11. 19-12. 6 (24일간)
 - 본회: '84. 11. 26-11. 29 (4일간)
- 검사반: 보사부 의료제도과 직원 3명

토의사항

1. 서울시 상·하수도료 조정 재촉구에 관한 건
2. 병원급 자보 단체 계약조건 추진에 관한 건
3. 근재환자 계약조건 단체 협약에 관한 추진경위
4. '85년도 병원 종합학술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건
5. 기 타

가. 상임이사 보선에 관한 건

전 임 원 장				후 임 원 장 추 천			
성명	소 속	해 임	임 기	성명	소속	임 명	임 기
최진학	한국원호 복지공단 원호병원장	84. 11. 30	85. 3. 31	양경호	파동	84. 11. 30	85. 3. 31
				(육군소장 예편)			

*정관 제15조(임원보선) 제3항: 이사가 임기 중 사임했을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12 면에서

로 附加價值稅가 免稅되나 賃借經營者가 獨立的으로 供給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值稅가 課稅됨.

⑥ <부가 1235-1086, 78. 3. 20> 非營利團體의 廣告料收入 免稅與否: 附加價值稅法施行令 第46條의 2 및 同規則 第13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 其他 團體가 不特定人에게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團體의 目的이나 精神을 널리 알리기 爲하여 發行하는 機關紙 또는 이

와 類似한 出版物(그 機關의 名稱이나 別稱이 當該出版物의 名稱에 包含되어 있는것에 限함)과 關聯된 廣告用役은 附加價值稅가 免除됨.

⑦ 病院經營을 爲해 사용하던 施設等 고정자산을 賣却時는 免稅되는 用役供給에 必需的으로 附隨되는 財貨 또는 用役의 공급에 해당되어 免稅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計算書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

[담당: 柳泰鉉 서울시 中區 明洞 1街 1의 3 (YWCA 607号) : 753-6175~9] *